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4. 12. 22.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11. 24.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4. 11. 24.

다. 상정일자 : 제26회정기회 제9차위원회('94. 12. 22)상정, 질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관재 건설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도로법시행규칙이 '94. 2. 1일에 전문개정됨에 따라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세입을 시수입·구수입으로 구분하고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세입구분에 관계없이 구수입으로 조치하는 사항등을 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세입구분에 관계없이 구수입으로 함 (안 제8조제3항)
-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로폭 20M이상은 시수입으로, 폭 20M미만은 구수입으로 세입을 구분함. (안 제10조)
- 별표1의 점용료산정기준표 내용 일부개정 (안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박관수 전문위원)

종전에는 도로폭에 따라 시수입과 구수입으로 구분되던 수수료 수입이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8조제3항이 '94. 10. 3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전액

구수입으로 전환되었으며,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한 것등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마포구의 세원확대로 재정형편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는 점도 있으나 도로상 무질서한 무단적치물로 인하여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의 보행에도 큰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적치물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무단적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전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에 의한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무단점용료 부과시 기간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 답변요지(이관재 건설관리과장) :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하여 부과함.
- 질의요지(전병만 위원) : 불법으로 보도 횡단 출입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철저히 점용료를 받아야 할 것은 물론이고, 건축허가시 점용허가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보기 바람.
- 답변요지(이관재 건설관리과장) : 발견되는대로 철저히 징수토록 하겠으며, 건축허가시 점용허가를 함께 받는 방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 질의요지(이인구 위원) : 아직도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이 직접 자체조사해 볼 의향은 없는가?
- 답변요지(이관재 건설관리과장) :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이지만, 구청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0
----------	-----

제출일자 : 1994. 11. 24.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 도로법시행규칙이 '94. 2. 1일에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세입을 시수입·구수입으로 구분하고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세입구분에 관계없이 구수입으로 조치하는 사항등을 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세입구분에 관계없이 구수입으로 함(안 제8조제3항)
-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로폭 20M이상은 시수입으로, 폭 20M미만은 구수입으로 세입을 구분함(안 제10조)
- 별표1의 점용료산정기준표 내용 일부 개정(안 별표1)

3. 개정근거

- 도로법(1993·6·11 법률 제4561호) 제40조, 제43조, 제77조의2, 제80조의2, 제86조의2
- 도로법시행령(1994·9·16 대통령령 제

14382호) 제24조, 제26조의2, 제37조의3

- 도로법시행규칙(1994·2·1 건설부령 제546호) 제33조, 제35조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4·10·31 조례 제3140호)

4. 개정조례(안) : 없음

5. 예산조치 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이라 한다)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10조중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를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로 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1호중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를 “송전탑·변압기·저장고·공동구·전력구·통신구·작업구(맨홀)·기타”로 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중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전기통신관”을 각각 삽입하고, “전기 및 통신시설관”을 삭제한다.

【별표 1】 점용 산정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3호중 “간판”을 각각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으로, “사설안내표지”를 “사설안내표지”로 하고, 기준단위의 점용단위란의 제3호중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1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

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8 조(수수료의 징수) ①(생략)</p> <p>②(생략)</p> <p>③(신설)</p>	<p>제 8 조(수수료의 징수)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로 징수한다.</p>
<p>제10조(새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제10조(새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별표 1)

신 · 구조 문 대 비 표

현					개 정 안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금액단위: 원)					(금액단위: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 면적	기간 단위		점용 면적	기간 단위					
1. 전주·공중전화·송전탑기타 이와 유사한 것	생 락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1. 전주·공중전화·송전탑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현 행 과 같 음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	점용 면적 1㎡	1년				송전탑·변압기·저장고·공동구·전력구·통신구·작업구(맨홀)·기타	점용 면적 1㎡	1년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기타 이와 유사한 것	생 락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현 행 과 같 음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기 및 통신시설관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신 · 구조 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접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접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 면적	기간 단위					점용 면적	기간 단위		점용 면적	기간 단위	
1. <u>광고탑·광고 판·간판·사 설안내표지· 현수막·아취 기타 이와 유 사한 것</u>	<u>광고탑·광 고판·간판</u>	일시 설치한 것(1월 미만 점용)	표시 면적 1㎡	1일	300	<u>광고탑·광 고판·간판 (돌출간판 을 포함한 다)</u>	<u>간판·간판 (돌출간판 을 포함한 다)</u>	일시 설치한 것(1월 미만 점용)	표시 면적 1㎡	1일	300			
		기 타	표시 면적 1㎡	1년	88,400			기 타	표시 면적 1㎡	1일	88,400			
	<u>사 설 안 내 표 지</u>		1개	1년	73,650	<u>사 설 안 내 표 지</u>		1개	1년	73,650				
	현 수 막	계사나 종료 행사의 용도 로 일시 설치 한 것	점용 면적 1㎡	1일	300	현 수 막	계사나 종료 행사의 용도 로 일시 설 치한 것	표시 면적 1㎡	1일	300				
			표시 면적 1㎡		300			표시 면적 1㎡		300				
기타의 용도			300		기타의 용도			300						
아 취	도 로 횡 단	표시 면적 1㎡	1년	176,800	아 취	도 로 횡 단	표시 면적 1㎡	1년	176,800					
	기 타	1㎡		88,400		기 타	1㎡		88,400					
4.~10.(생략)						14.~10.(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비 고</p> <p>1. (생략)</p> <p>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신설)</p> <p>3.~11. (생략)</p>	<p>※ 비 고</p> <p>1. (현행과 같음)</p> <p>2. .... ..... .....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을 365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p> <p>3.~11. (현행과 같음)</p>